

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인 천 광 역 시

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28
----------	----

제출년월일 : 2010. 8. 19.

제출자 : 인천광역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인천시정 전반에 대한 변화와 개혁방안 모색을 위한 자문기구로서의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에 따른 법적근거를 마련하고,
- 나. 위원회 구성에 따른 기능과 회의운영 방법 등을 명시하여 위원회 개최·운영에 따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민의 이익과 편의증진을 위해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 등을 자문할 수 있는 기능을 부여함(안 제2조)
- 나. 시정참여정책위원회는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함(안 제3조)
- 다.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(안 제5조)
- 라. 위원회의 사무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맡도록 함(안 제6조)
- 마.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)

3. 참고사항

-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

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전반에 대한 효율적인 추진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인천광역시 시정참여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.

1. 시민의 이익과 편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 및 시책제안
2. 시정의 개혁과제 발굴 및 개선 방안
3. 효율적인 정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3조(구성 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은 시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각계 각층의 전문가 및 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.

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
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4조(회의)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②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6조(간사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.
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고, 서기는 기획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제7조(의견청취 등) ① 위원회는 상정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또는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집할 수 있다.

제8조(수당 등)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, 전문가 및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,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준속기한) 이 조례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

관련법령 검토와 발체사항

관련법령	<p>□ 지방자치법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22조(조례) :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 ○ 제116조2(자문기관의 설치 등) :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 <p>□ 지방자치법시행령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제80조(자문기관의 설치요건) :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6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회·위원회 등의 자문기관(이하 "자문기관"이라 한다)을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 2.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②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심의사항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·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. ○ 제80조의2(자문기관의 구성) : ① 자문기관은 설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는 데 필요한 인원으로 구성한다. ② 자문기관의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,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.
관련법규 정비대상	“해당없음”
특이사항	“해당없음”